

가계대출상품설명서「예적금담보대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계유지 등 기타 사용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 **신용대출**은 고객님의 소득 등에 따라 평가되는 **개인 신용도에 기반**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가 산정되는 대출상품입니다.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나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동일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이용하는 경우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대출한도를 조회했는데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나요?

-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는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가요?

-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여신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3천만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최대 60만원 부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대출상품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 **예적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과의 상계를 통해(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담보예적금 범위 내) 회수가 확실한 경우 상환지연에 대한 연체 및 연체이자는 받지 아니하고 **약정이자를 징수**합니다.
단, 담보예적금과의 상계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계일로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 또는 고객센터(1588-5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성

상 품 명		상환 방법	☐ 만기일시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기타 ()
적용 금리	_____ % 담보예적금 약정금리 + ()%	대출 금액	_____ 원	
금리적용방식	☐ 변동 ☐ 고정 ☐ 혼합	만기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중도상환수수료	☐ 부과대상 ☐ 부과대상 아님	채권 보전	☐ 담보 ☐ 신용 ☐ 기타()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님의께서 원리금(대출원금+이자) 상환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의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며, 심사 후 금융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께서 가입한 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 좌측 체크박스(☐)에 표시됩니다.

☐ 인지세 : () 원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설정** :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및 대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권	대상 대출상품	담보의 대상	담보권 설정의 절차
근질권	예금담보대출	담보로 제공한 예금	예금에 근질권 설정

·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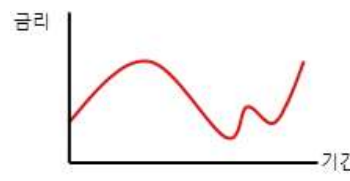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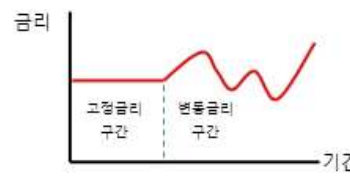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설정 담보권	대출상품 예시	담보권의 실행
근질권	예금담보대출	저축은행은 대상예금을 해지하여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충당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NH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4 대출 이자율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의 신청하신 상품은 [**금리**] 방식의 상품입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운용 형태			
특징	·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일정주기(3/6/12개월 등) 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
장점	· 시장금리 상승기 에 금리 인상이 없음	· 시장금리 하락기 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금융소비자의 자금계획 에 맞춘 운용 가능
단점	· 시장금리 하락기 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상승기 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 ※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본 대출은 예적금담보대출로 [담보 예·적금 약정금리 + **1.5%**]로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업무원가	법적비용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 등)를 더하여 결정됩니다.
-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 기준금리는 자금조달금리이며,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COFIX**, **CD금리**, **저축은행 예금** 등 공표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 “자금조달금리”란 예수금, 차입금 등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 가산금리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원가 : 인건비, 경비 등 대출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법적비용 이외의 비용
 - 법적비용 : 관련 법규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교육세 등)
 - 자본원가 :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
 - 신용원가 : 차주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 목표이익 : 저축은행이 설정하는 기대수익의 규모
 - 조정금리 : ①전결 조정금리, ②부수거래(급여통장 개설 유무·수신실적·체크카드 사용실적 등) 조정금리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 거래감면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별 특징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 매월 총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중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가는 가차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계산되어,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가는 가차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 (예시) 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로 대출받은 경우

※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1,810만원	500만원	2,310만원	8,190만원
2년	1,900만원	410만원	2,310만원	6,290만원
3년	1,995만원	315만원	2,310만원	4,295만원
4년	2,095만원	215만원	2,310만원	2,200만원
5년	2,200만원	110만원	2,31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50만원	1.155억원	-

○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2,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8,000만원
2년	2,000만원	400만원	2,400만원	6,000만원
3년	2,000만원	300만원	2,300만원	4,000만원
4년	2,000만원	200만원	2,200만원	2,000만원
5년	2,000만원	100만원	2,10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00만원	1.15억원	-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NH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2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3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4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5년	1억원	500만원	1.05억원	0원
합 계	1억원	2,500만원	1.25억원	-

•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연 3%**이며, 연체기간별로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일 기준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로 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아래(①~⑤)의 내용은 일반적인 연체이자납부에 대한 설명이며, 본 상품인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상환지연**에 대한 연체이자 는 받지 아니하고 약정이자를 징수합니다. 단, 담보 예적금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계일로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단,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단,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④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① 또는 ③에 따릅니다.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NH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⑤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단, **계좌별 대출원금(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 또는 납입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용카드 정지 등) 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 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을 일부 상환하였다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하셨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반환됩니다.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정의	▶ 대출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무효화)하는 것	▶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행사 기한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	▶ 제한 없음(대출 만기 전이면 행사 가능)
장점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기록 삭제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없음
단점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필요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라.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개인인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평가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는 자동화 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및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와 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다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8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NH저축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도대출),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 및 안내사항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납입방법

- 고객님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매분기/매년)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저축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 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신용정보법(연체부도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설명을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 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별 대출 원금(약정금액 또는 한도금액 기준)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1. 대출계약이 고객님의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2.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담보물(담보 예적금)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님의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 상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3-1. 예적금담보대출은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않지만 예적금과의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계일로부터 연체이자를 징수 합니다. 또한 연체이자를 일부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3-2. 단,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4.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 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신용정보법 (연체·부도·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① 예 / ② 아니오

본인은 NH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고객부담비용**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 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 _____인(서명)

연대보증인/제3자담보제공자 : _____인(서명)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콜센터(1588-519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nhsavings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23호(2026.07.20. ~ 2027.07.19.)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개별거래	·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한도거래	·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담보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경매)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근질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양도담보	·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담보물 소유자)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담보신탁	· 위탁자(소유자)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공매)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

대위변제	·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합니다.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구채무자)로부터 제3자(신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매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채권양도	· 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구채권자)로부터 제3자(신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구채권자)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저축은행(신채권자)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 다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잔액 또는 납입 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재무정보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신용평점	·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Loan-To-Value)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To-Income)	·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투기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Service-Ratio)	·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
전세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